

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4-460호

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(건설업 등록기준) 및 동법시행령 제13조(건설업 등록기준)를 위반(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및 미발급)한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 5개월) 부과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4. 23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

### 1. 위반업체

상호	법인등록번호	대표자	소재지	등록업종	업종등록번호
(주)디자인그룹아침	110111-*****	김*	서소문로 103,312호(서소문동) *이사로 소재불명	실내건축공사업	금천**--**--**

### 2. 위반 및 처분내역

위반내용	위반근거	처분	처분근거
등록기준 미달 (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)	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2	<b>영업정지 5개월</b> (24.4.22.~24.9.21.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동법시행령 별표6

3. 공고기간 : 2024. 4. 23.(화) ~ 2023. 5. 7.(화)

4. 공고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

5. 공고방법 : 건설업관리시스템(CIS) 공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

6. 안내사항 : 귀사의 소재불명 · 고액체납으로 인한 남대문세무서 직권폐업(사업자 등록말소)사실이 확인되었을지라도 건설업관리규정 별지7 9. 라. 규정(실태조사 중 조사대상업체의 폐업신고는 실태조사 완료 전까지는 수리하지 아니한다.)에 의거 귀사의 영업정지기간 종료 및 기타 위반사항 조사완료 후 귀사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 진행 예정이오여 이 기간 중에는 같은 법인번호로 건설업 신규등록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7. 문의처 : 중구청 건설관리과 도로보상팀 (☎ 02-3396-6022). 끝.